

❖ 정부시책 ❖

'97년도 중소기업 기술지도 확대 실시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애로타개를 지원하기 위하여 '97년도 기술지도를 확대실시하기로 하고 11개 지방청 및 25개 지도기관을 통해 일제 지도신청접수에 들어 갔다.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한 기술이전지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96년도 기술지도결과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지도수요도 증대됨에 따라 62억원을 투입하여 '96년도 1,300개보다 100개 기업이 확대된 1,400개 기업에 대해 기술지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고 밝혔다.
- '97년도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생산현장애로기술, ISO 기술 외에 고도복합기술에 대해서도 대학·연구기관의 고급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제가 해결될 때까지 종합적으로 기술지원을 하게 되며,
 - 지방특화산업육성을 위한 전통공예특산품생산기술 지도사업과 국내 51개 전문지도기관이 보유한 956개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지도, 그리고 환경친화적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ISO 14000 인증획득 지도사업이 신설된다.

〈'97년도 기술지도사업〉

지 도 분 야	지도업체 수	비 고
- 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	500개	기 존
- 공장혁신(Refractory)지도	200개	확 대
- 품질경영(ISO 9000)인증획득 지도	150개	기 존
- 환경경영(ISO 14000)인증획득 지도	50개	신 규
- 정밀측정력 향상지도	50개	기 존
- 지방전통공예특산품 생산지도	50개	신 규
- 지도기관보유기술이전지도	수시	신 규
- 업종별 공통애로 과제 지도	300개	신 규
- 유망선진기술기업지도	150개	기 존

- 기술지도신청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체로서 기술향상에 대한 경영자의 의지가 확고하고 부채비율이 80% 이하인 기업이면 모두 가능하다.
- 중소기업청은 '97. 1. 31까지 지도신청접수를 받아 지도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혁신의식교육 실시와 함께 지도비용의 90%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여 기술지도효과를 극대화시켜나갈

계획이다.

- 기술지도가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거 지도과정상 발생된 지도비용의 세액공제와 함께 산업인력, 자금지원상 우대하고 지도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 및 우수제품 전시회를 통한 판로지원 등의 특정이 주어지게 된다.
- [※ 자세한 내용은 65page “'97 中小企業 기술지도 사업 안내” 참조]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자금 융자제도 개선

통상산업부는 국제무역수지 적자의 근본적인 해소 및 산업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 사업에 대하여 '97년도부터 개별품목당 지원한도를 크게 늘리는 한편,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기술개발지원 융자사업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임.

- 통상산업부는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개발 융자사업 운용중에 나타난 애로사항과 현장실태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97년도부터 적용해 나가기로 함.
- '9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면
 -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 지원자

금의 확대(최고 30억원)

- 현행 과제별 지원한도를 30억원까지 확대(시제품 : 20억원, 첨단 : 10억원의 구분도 없음)하여 개발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형 기계류등 핵심자본재 및 첨단기술 제품의 국내개발을 실효성 있게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음.
- 중소기업 우대지원
 -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코자 하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지원강화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중소기업 및 R & D투자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하였음.
 -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연

구개발자금(출연금)을 우선 지원

- 최근 제품의 life-cycle 단축추세에 맞추어 시제품개발기간을 36개월 이내로 제한하되, 과제의 특성상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기술개발 risk가 큰 장기 개발과제(36개월 이상)에 대해서는 보다 유리한 공업기반 기술개발자금(출연금)을 우선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성공하였을 경우 융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함으로써 기술개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 제품개발 단계별 분할지원 실시

- 총 개발비가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과제로서 2-3년의 개발기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소요자금을 일시에 지원하지 않고 연도별로 분할지원(당해년도 소요자금은 전액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자금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도 예방하고자 한 것임.

* 지원업체수 : ('96) 570개사 → ('97) 750개사로 증가 예상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융자사업 기관(취급기관)의 확대

- 품목별 전문단체를 자금취급기관으로 추가지정하여 취급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임.

－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관리의 강화

- 현행 평가관리업무는 사업완료과제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개발진행중인 과제에 대해서도 사업수행 실태를 매년 점검토록 하고,
- 융자사업 취급기관별로 담당하던 기술개발 완료과제의 최종평가업무를 제3의 전문평가기관(산업기술정책연구소)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함.

- 통상산업부는 이와 함께 금년도에 크게 늘어나는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개발 융자금('96 : 2,545억원 → '97 : 2,927억원)의 효율적 집행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융자사업중 대출기간내 미대출잔액이 발생할 경우 취급기관장 책임하에 예비사업자에게 즉시 전환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간소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참고〉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개발 사업 지원실적 및 사업성과

- 시제품부문 : '86-'95년까지 5,757개 과제에 6,020억원을 지원하여 4,361개 과제를 개발 완료

－ 수출증대 37억불, 수입대체 84억불 등 총 121억불의 국제수지 개선

- 첨단부문 : '90-'95년까지 952개 과제에 2,695억원을 지원하여 556개 과제를 개발 완료

- 수출증대 0.5억불, 수입대체 4억불 등

총 4.5억불의 국제수지 개선

〈부문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개, 억원)

구 분	시 제 품		첨 단		계	
	과제수	금 액	과제수	금 액	과제수	금 액
'86-'95	5,757	6,020	952	2,695	6,709	8,715
'96	420	2,000	140	545	560	2,545
'97 계획	407	2,300	168	627	575	2,927

주) 첨단부문은 '90년부터 지원

輸入先다변화 품목 공고

통상산업부는 지난 6월에 마련된 수입선 다변화제도 운영방침에 따라 지난 7월에 10개 품목을 해제한데 이어 금년 1월 해제대상 품목 25개를 선정하고 수입선다변화 공고를 개정,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선 다변화품목 수는 현재 152개에서 1월부터 127개 품목으로 줄어들게 된다.

통산부는 이번 해제대상품목 선정과 관련, 장기간 다변화품목으로 지정돼 경쟁력이 어느정도 확보되었거나 현재 국내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 또는 일본으로부터 예외수입이 많거나 국내시장 규모가 작아 해제시 對日수입 증가가 미미한 품목 등 다변화품목으로 지정할 실효성이 적은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완전해제 대상품목(전기관련)

HS	품 명
8502.13.1010	압축화식 피스톤식 내연기 관을 갖춘 발전기 400kW -750KVA

■ 부분해제(전기관련)

현행		변경	
HS	품명	HS	품명
8508. 10. 0000	각종의 전기드릴 다만, 착암기 및 함마드릴은 제외	좌 동	각종의 전기드릴 다만, 착암기, 함마드릴 및 <u>드릴 구경 25mm 이상이며 소비전력 1000W 이상</u> 의 것 제외
8508. 80. 0000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다만, 대패, 그루버, 정타기, 함마, 고주파 전동공구 및 충전식 드릴은 제외	좌 동	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다만, 대패, 그루버, 정타기, 함마, 고주파 전동공구, 충전식드릴 및 <u>임팩트렌치는 제외</u>

■ 수입선다변화 품목 현황(전기관련)

HS	품목명
8502 12 000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75KVA 초과 375KVA 이하의 발전세트
20 1000	◦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75KVA 이하의 발전세트
8504 40 2010	◦ 무정전 전원장치.(단상 0.5KVA 이상 50KVA 이하 및 삼상 10KVA 이상 750KVA 이하의 것에 한함)
40 2090	◦ 전동기속도제어장치.(삼상 0.5KVA 이상 400KVA 이하의 것에 한함)
8508 10 0000	◦ <u>각종의 전기드릴. 다만, 착암기, 함마드릴 및 드릴구경 25mm 이상이며 소비전력 1000W 이상의 것은 제외</u>
80 0000	◦ <u>기타의 수지식 전동공구. 다만, 대패, 그루버, 정타기, 함마, 고주파전동공구, 충전식드릴 및 임팩트렌치는 제외</u>
8516 60 2000	◦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
8536 20 0000	◦ 전압 1,000V 이하의 자동차단기중 다음의 것 - 배선용차단기(Circuit Protector를 포함하며 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누전차단기(정격전압 4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기중차단기(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3,200A 이하의 것)
8536 50 9000	◦ 전자개폐기(Magnetic Switch)(전자접촉기를 포함하며 사용전압 600V 이하용의 정격용량 375KW 이하의 것)

■ 생산기술개발 대상품목 및 부품수입 추천기관

추천기관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	
	HS	품명
한국전기공업진흥회	8502	압축점화식의 발전세트
	8504	무정전 전원장치, 전동기 속도제어장치
	8516	수지식 전동공구
	8536	전기밥솥 전자개폐기

'97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 경쟁물품 지정

-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제품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97년도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과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통상산업부 공고 제 1996-152호, 1996. 12. 30)하였다.
- 통상산업부는 '97년 단체수의계약물품과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지정을 통하여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는 방침하에 기존의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 중 일정부분을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전환 지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품질 및 기술향상 노력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이에 따라 '97년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수는 '96년의 289개에서 10%가 축소된 260개 물품이,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96년의 71개에서 25개가 증가된 96개로 각각 지정·공고되었다.
- 이와 같이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전환 지정함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구매시 중소기업간의 경쟁체제가 확대되어 경쟁력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 '97년 단체수의계약물품은 '96년에 비해 10% 축소된 260개 물품이며 89개 생산조합이 수의계약에 참여하게 됨.
 - '96년 지정물품중 이번엔 지정제외된 물품은 납품실적미달(기준 : 연간 2억 5천만원 이상)인 전기조합의 전압조정

기 등 12개 물품을 비롯하여 모두 31개 물품이며

－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2개 물품(전광판, 복공판)은 신규로 포함되었음.

○ 이러한 지정물품의 축소는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65년 도입된 이래 안정적인 물량이 확보됨으로 해서 중소기업계에서 품질 향상 및 기술개발노력을 소홀히 하는 등 경쟁력 향상에 오히려 역행하는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임.

○ '97년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96년 단체수의계약에서 지정제외된 물품등 30개가 신규로 지정되고 '96년 기 지정물품중 대기업의 참여 우려가 없는 5개 물품이 제외되어 '96년 대비(지정물품 71개) 25개 물품이 늘어난 96개 물품이 지정되었음.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제도는 정부 및 공공기관 구매시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통산부는 금번 단체수의계약에서 지정제외된 물품을 모두 중소기업간의 경쟁물품으로 지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음.

○ 한편, 통상산업부는 최근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단체수의계약물품의 급격한 축소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축소대상을 최소한의 품목에 한정하는 등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판로보호”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관계기관, 업계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결정하였음.

○ 정부는 중소기업제품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므로써 이 제도를 중소기업의 보호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임.

■ 단체수의계약 지정물품(전기관련)

정부물품 분류번호	표준산업 분류번호	물 품 명	계약 대상지역	조 합 명
5930-123	31201109	개폐기, 절연수동 및 자동(가공설치용의 것으로 SF6 가스개폐기에 한함)	전 국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5975-021	28114109	클램프(전기용에 한함)	전 국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6110-011	31203101	배전반(전기조절장비)	전 국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6110-014	31203109			

정부물품 분류번호	표준산업 분류번호	물 품 명	계약 대상지역	조 합 명
6110-063	31109109	무정전전원장치	전 국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6110-070	31102101	변압기	전 국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6120-010	31102109			
6120-013				
6115-053	31101109	발전기, 디젤엔진(1,000KW이하에 한하며, 해상용 및 방음형은 제외)	전 국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6130-039	31109102	정류기, 부동용	전 국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6145-006	31301102	전화선(비닐절연, 옥외전화선, 옥내전화선, 강심옥외전화선 포함)	전 국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6145-035	31301101	케이블, 제어	전 국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6145-039	31301101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0W)	전 국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6145-040	31301102	점파선(나이론 피복 2개 연점파선, PVC 점파선, ESS 점파선 포함)	전 국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6145-046	31301101	강심알루미늄연선(ACSR-OC를 포함하며, AW류는 제외)	전 국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6145-077	31301101	600V 비닐절연전선(I V)	전 국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전기관련)

정부물품 분류번호	표준산업 분류번호	물 품 명	관 련 조 합 명
5925-022	31301109	차단기, 누전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6110-011	31203101	배전반(154KV, 354KV용 보호배전반에 한함)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6110-181	31203109	계장제어장치(수처리설비에 한하며, 일일처리능력으로 하수는 1.5만톤, 상수는 10만톤 이하에 한함)	한국자동제어반공업협동조합

정부물품 분류번호	표준산업 분류번호	물 품 명	관 련 조 합 명
6110-022	31109109	전압조정기(AVR에 한함)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6120-001	31102104	리액터(분로용 제외)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6130-027	31109100	충전장치(충전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6145-015	27231102	연동선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6145-019	31301102	케이블, 시내(PE절연알미늄 차폐케이블, PE시내쌍케이블, CCP시내케이블을 포함하며, 폼스킨케이블은 제외함)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6145-078	31301102	케이블(셀프)써포오팅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상업借款 도입 등을 위한 시설재 확인요령 고시

국산시설재 및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를 구입하기 위해 외화증권을 발행하거나 상업차관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은 반드시 한국기계공업진흥회로부터 대상 시설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통상산업부는 올해부터 설비투자 촉진 및 자본재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도입과 외화증권발행 및 대기업의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 도입에 대한 상업차관이 허용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당 계획서 신청에 필요한 국산시설재 및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 확인서 발급에 관한 확인요령을 제정, 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7-1호, 1997. 1. 7)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한국기계공업진흥회는 앞으로 국산시설재 구입시 국산시설재 여부 및 국산시설재 사용비율을 확인하게 되고 대기업의 상업차관 도입을 위한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에 대한 확인업무도 취급하게 된다.

특히 그 확인기준으로 국산시설재의 경우 시설재를 구성하는 주요 품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되 가액기준을 국산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구입가액으로, 외국산은 FOB 가액으로 하기로 했다.

또 국산시설재 사용비율은 해당기업이 연간 단위사업별(표준산업분류 5단위를 초과할 수 없다)로 투자하는 시설재총액 중 국산

시설재 사용비율을 산정해 확인해 주도록 했다.

국산대체 불가 여부는 당해 시설재가 국산 불가이거나 국산 가능하더라도 경제성 및 성능면에서 국산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임을 확인해 판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를 도입하기 위해 상업차관도입계획을 신청하는 일반 대기업은 대상 시설재의 국산대체 불가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고시에서는 또 확인서 발급대상자를 △국

산시설재를 50% 이상 구입하기 위해 외화증권 또는 상업차관 발행계획을 신청하는 자 △국산대체불가 시설재 및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를 도입하기 위해 해외증권 발행계획을 신청하는 자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를 도입하기 위해 차관도입계획을 신청하는 일반대기업 등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신청업체가 고의로 신청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고 향후 1년간 확인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97년 關稅減免대상 물품 지정

첨단 및 방위산업물품으로 관세감면대상이 되는 품목의 경우 정밀전자산업, 전자제어 및 고도정밀기계산업, 신소재산업, 정밀화학산업, 생물산업, 광산업, 항공기산업 7개 업종의 190개로 작년도의 181개에 비해 9개 증가했다. 재정경제원은 관세감면에 관한 총리령을 개정해 금년 1년동안 적용할 관세감면대상 물품을 지정했다.

이에 의하면 재정경제원은 공장자동화물품으로 작년도 관세감면대상인 404개 품목중 160개는 재지정하고 169개는 규격을 변경해 지정했으며 83개를 신규로 지정, 총 412개를 금년도 관세감면대상으로 고시했다.

또 첨단 및 방위산업물품으로 작년도 관세

감면대상인 181개 품목중 118개를 재지정하고 72개를 신규로 지정, 총 190개를 관세감면대상으로 고시했다.

이번 지정과 관련, 재정경제원은 기업환경변화에 따라 새로 생겨난 물품들을 추가로 지정했으며 기존 물품중 국내생산이 가능한 물품들은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관세감면제도는 기업의 자동화를 통한 첨단기술분야의 기술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도의 관세감면율은 공장자동화물품, 첨단 및 방위산업물품 각각 20%이며 내년도('98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관세법 및 시행규칙도 개

정, 관세감면제도를 일부 개선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물품(전기관련)

세 번	부 호	품 명
8501	64	증기터빈 발전기
8514	10	진공 열처리로
8514	10	노콜록 용접로
8514	10	단결정 육성장치
8514	10, 20, 30, 40	전기로 또는 오븐
8514	10, 30	정련로
8514	20	인덕션 히터
8514	20	전기 유도로
8514	20	도체 예열기
8514	20, 30	자동납땀기
8515	11, 19, 80	
8514	40	경화기
8515	21, 29, 31, 39	용접로보트
8515	21, 29, 31, 39, 80	용접기
8515	21, 29, 80	와이어 접착기
8537	10, 20	배전반 또는 제어반(조절반을 포함한다)

■ 첨단기술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전기관련)

○ 정밀전자산업

세 번	부 호	품 명	규 격
8514	10	소성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칩콘덴서의 소성용으로서 최대 가열온도가 1천350도(℃)이상이고 온도정도가 ±5도(℃)이하의 것 2. 칩콘덴서의 단자전극 소성용으로서 최대 가열온도가 900도(℃)이상이고 온도정도가 ±1도(℃)이하의 것

세 번	부 호	품 명	규 격
8514 8543	10, 20, 30, 40	전기로와 오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반도체제조, 칩콘덴서 또는 칩저항기, 동박적층판, 압전기결정소자 제조용의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솔더(Solder) 또는 에폭시(Epoxy) 소성용의 것으로서 200도(℃)이하의 것 나. 온도분위기를 유지하며 크립납을 용융, 납땀시키는 예열존 및 본기열존으로 구성되며 로내의 온도가 300도(℃)이하의 것 2. 자기디스크제조용의 것으로서 온도정도 ± 0.5 퍼센트(%)이하의 것 3. 전자관제조용의 것으로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온도정도가 ± 2 도(℃)이하의 것
8515	21, 29, 31, 39, 80	전기저항식 용접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전자관제조용의 것으로 125와트(W)이상의 것 2. 자기헤드제조용의 것으로서 4포인트(Point)순간 용접기능이 있는 것 3. 용접위치정도가 ± 0.05 mm이내인 것

○ 전자제어 및 고도정밀기계산업

세 번	부 호	품 명	규 격
8514		저항식 소결로	수평식 가압방식의 것으로 가압능력 30톤(t)이상의 것에 한한다.
8514	10	전기식 소결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PLC방식의 연속진공식으로 최고온도 1,250도(℃)이상이고 챔버(Chamber)가 2개이상인 것

세 번	부 호	품 명	규 격
			2. 초경 제조용의 고압소결로로서 최고압력 제곱센티미터당 2,000키로그램(kg/cm ²) 및 최고온도 2,000도(°C)이상의 것 3. 물리증착로로서 최고가열온도가 700도 (°C)이상이고 로의 직경이 300밀리미터 (mm)이상인 것 4. 금속 및 금속탄화물의 소결로로서 메쉬벨 트(Mesh Belt)형 또는 푸셔(Pusher)형의 것 5. 배취(Batch)식으로서 최고 가열온도 1천 500도(°C)이상이고 챔버(Chamber)가 1 개인 것
8515		자동 티그 용접기 (Automatic Tig Welding Machine)	레이저 센서를 따라 자동 티그(Tig) 용접이 가능한 것으로서 폭 30센티미터(30cm)×길 이 40센티미터(cm)×높이 30센티미터 (cm)의 캐리어(Carrier)로 구성된 것에 한 한다.

○ 신소재 산업

세 번	부 호	품 명	규 격
8501	13	비상발전기	프로그램제어(PLC) 또는 수치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발전용량이 시간당 1,000키로와트 (kW)이상이고, 분당 회전수 1,800회(rpm) 이상인 것에 한한다.
8504	10	정류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동전해용으로 정류소자(Thyrister)를 사 용하여 35키로 암페어(kA) 및 110볼트 (V)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것 2. 황산 제조용으로 아황산 가스중의 미스트 및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전기 집진설비 전원공급용으로 정류기로 전류가 직류 45 키로볼트(kV) 이상인 것

세 번	부 호	품 명	규 격
8514	10, 20, 30	전기로 또는 오븐	
8514	20, 30	진공아크재용해로 차단기	진공상태에서 전기아크를 이용하여 강을 재용해하는 것으로서 최대 진공도가 10^{-5} 토오르(torr) 이상의 고진공도이고 최대 처리용해용량이 히트당 1톤(t/heat) 이상의 것에 한한다.
8535	90		전기동 제조용으로 전원을 오일(Oil) 또는 에어(Air)를 사용하여 일부 전원만을 차단하는 것으로 40키로 암페어(A) 및 110볼트(V) 이상인 것에 한한다.

○ 광산업

세 번	부 호	품 명	규 격
8514	10, 20, 40	가열로	최고가열온도가 800도(°C) 이상인 전기식 또는 전자유도식의 것으로서 광섬유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 항공기 산업

세 번	부 호	품 명	규 격
8514	10, 20	진공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진공열처리로는 최고온도 1천300도(°C) 이상 기온이 가능하고 1히트당 400키로그램(kg/heat) 이상 처리능력이 있는 것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

오는 2월부터 기술도입이 사실상 자유화된다.

또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의 고도기술수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1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자본을 수반한 제조업분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전용공단 및 국가공단의 토지임대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재경경제원은 외자도입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고 오는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 원자력, 방위산업, 조세면제대상으로 돼 있던 기술도입계약신고대상의 범위를 조세면제대상만으로 축소, 기술도입을 실질적으로 자유화 했다.

또 실효성 없는 신고수리 금지기준을 폐지하고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기간도 최장 30일에서 20일로 단축, 기술도입절차를 간소화했다.

재경원은 외국인의 국내기업 M&A(인수합병)를 피인수합병기업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 허용하되 장외시장에서 외국인과 피인수합병기업의 주주가 직접거래약을 체결하는 직접거래방식에 국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사업년도말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M&A의 경우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했으며 다만 외국인이 취득하는 지분이 15% 이하이고 최대주주가 되지 않으면 자동허가키로 했다.

재경원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시설재 수입용 5년 이상 상업차관의 도입을 허용하되 도입한도는 해외 모기업의 투자금액 범위내로, 도입선은 모기업,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회사로 한정했다.

재경원은 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의 영업활동범위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확대, 부분개방업종의 허용기준 내에서 추가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이를 신고로만 허용하고 미개방업종 또는 부분개방업종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추가사업은 허가를 받아 추가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설립관련 민원사무에 대한 특례처리기간을 경미한 민원사무의 경우 15일에서 10일로, 복합민원사무의 경우 45일에서 30일로 각각 단축하고 현재 별도의 허가사항으로 처리하고 있는 건축허가 관련 민원사무를 공장설립관련 민원사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이번 외자도입시행령을 개정을 계기로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것으로 정의해 왔던 외국인 투자를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을 10% 이상 보유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 등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과기처, 中企에 기술 무상양허

과학기술처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

원 등 10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31개 대학 등에서 개발한 315개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양허하기로 했다.

과기처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 과 연계해 지난 '9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4차에 걸쳐 483개 과제에 대해 525개 기업의 참여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냈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무상양허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315개 대상 기술과제를 공고했다.

과기처는 특히 이 사업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출서류와 평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조건을 확대·보완했다.

이에 따라 대상 기술과제의 무상양허에 따른 정부부담 비율이 현행 50%에서 80% (20%는 기업 부담)로 확대되고 신청기간도

사업기간 내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기간도 1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과제는 기간을 연장·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처는 이번 사업을 위해 기술이전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자금으로 20억원을 지원하고 기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운전자금은 한국종합기술금융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조해 융자될 수 있도록 추천할 계획이다.

기술이전을 원하는 기술보유기관과 중소기업은 금년 12월까지 언제라도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에 신청할 수 있다.

〈연락처〉

과학기술처 : 연구관리과

(TEL : 503-7628).

■ 무상양허 기술(전기관련)

기관명	기술분야	기술명
한국전기연구소 (11개 과제)	전자·정보·통신	광전류 및 광전압 센서의 성능개선
		컴퓨터용 RF 무선 키보드 개발
		전력선 통신 기술
	기계·설비	배전급 SF6 가스절연전력기기의 최적절연 설계 기술 개발
		펄스형 ND:YAG레이저 전원 설계 기술
		변압기특성 자동측정 SYSTEM
		금구류 히트 싸이클 시험 측정자동화
		변압기 권선온도 상승치의 컴퓨터 측정시스템 개발
		붓심변류기(BCT)포화특성 측정시스템 개발
	소재	탈피기능을 향상시킨 전도성 고무전선 제조기술 내트래킹 절연카바 설계 및 적용기술

'97년도 市場支配的품목 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도 시장지배적(독과점) 품목으로 광섬유케이블 등 36개를 신규로 지정하는 한편 직관, 프로판가스, 컴퓨터용 수상기 등 10개를 제외하고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로써 금년도 시장지배적품목은 166개(사업자 386개社)로 금년도의 140개(326개社)에 비해 26개(60개社) 늘어났다.

공정위가 발표한 '97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고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증가해 지정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금년도 시장지배적 품목으로 신규로 지정된 품목은 주유기, 에스컬레이터 등 27개, 시장

점유율 증가로 인해 지정된 품목은 칫솔, 모사전송기 등 9개다. 또 금년도 지정품목중 매출액 감소로 지정요건이 미달, 제외되는 품목은 직관 등 2개, 시장점유율 감소 때문에 제외된 품목은 8개다.

공정위는 이번에 지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격히 규제할 방침인데 이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는 일반불공정행위보다 가중처벌된다.

공정위는 또 시장지배적품목중 26개를 우선 개선대상품목으로 선정, 금년중 이 품목의 경쟁촉진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1997년 시장지배적품목중 신규지정 품목

지정 사유	품 목 명	품목수
매출액 증가	홍삼, 맥아, 타이어코드직물, 방카C유, 카본블랙, 산화프로필렌, 초산, 무스프탈산, 디메탈테레프탈산, 몰루엔디미소시아네이트, 폴리에스터수지(선형), 폴리아미드섬유, 아크릴릭섬유, 자동차안전유리, 차량용백밀러, 알루미늄선, 가정용펌프, 주유기, 에스컬레이터, 차량용에어콘, 가스오븐렌지, 폐놀동박적층판, 에폭시동박적층판, 페라이트코아, 방송용VTR, 철도차량, 초등학교용 교과서	27개
시장점유율 증가	테레프탈산, 합성고무, 브라운관유리, 선박용내연기관, 전력회로차단기(고압용), 광섬유케이블, TV브라운관(천연색), 모사전송기기, 칫솔	9개